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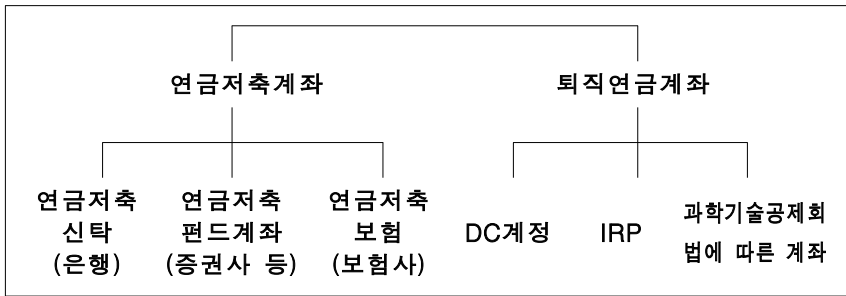
연금저축계좌 설명자료

I 연금저축계좌 제도개요

1 연금저축계좌란 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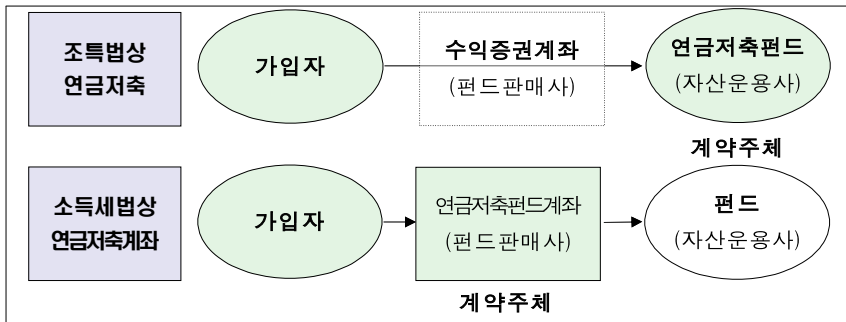
□ '13년 개정된 소득세법령에 따라 도입된 연금계좌 중 하나로서, 일정 기간 납입 후 연금 형태로 인출할 경우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는 세제혜택 금융상품

연금계좌 및 연금저축계좌의 범위



(참 고)

연금저축펀드계좌 업무흐름



2 연금저축(조세특례제한법)과 연금저축계좌(소득세법) 비교

구분	연금저축(조세특례제한법)	연금저축계좌(소득세법)
가입대상	만 18세 이상 국내거주자	제한 없음
납입요건	1. 납입기간 10년 이상 2. 분기 300만원 한도	1. 가입기간 5년 이상 2. 연 1,800만원 한도 (퇴직연금 가입자부담금 합산)
연금수령요건	1. 만 55세 이후 2. 5년 이상 연금으로 지급받을 것	1. 만 55세 이후 2. 연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연금수령 (가입자의 수령개시 신청 후 인출)
연금수령한도	5년내 수령	연금계좌의 평가액 × 120% (11-연금수령연차) -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수령시 연금수령으로 인정 -한도초과분은 연금외수령이 되어 세율을 달리 적용
소득공제	연간 최대 400만원 이내	연간 최대 400만원 이내
연금수령시 과세	연금소득세 5% (동일 세율, 종합과세가능)	연금소득세 3~5% (연령별 차등, 종합과세가능)
종합과세 신고대상	연간 600만원 초과 (공적연금+사적연금)	연간 1,200만원 초과 (사적연금소득)
계약이전 (계좌이체)	다른 금융기관의 연금저축으로 계약을 이전 하는 경우에 해지로 보지 아니함 (전액이전만 가능)	다른 연금저축계좌로 이체하는 경우에는 인출로 보지 아니함(전액 또는 일부 가능) * 보험사 등 일부 금융회사는 일부이체 불가
연금수령개시/해지시 절차	연금수령개시신청서(금융회사 자체서식)	연금수령개시 및 해지신청서(법정 서식)
해지시과세 (연금외수령)	기타소득세 20% (종합과세 가능)	기타소득세 20% (종합과세 가능)
해지가산세	해지가산세 2%(5년 이내 해지시)	해지가산세 없음
특별중도해지 사유 (연금외수령)	① 천재지변, ② 가입자의 사망 ③ 가입자의 퇴직 ④ 가입자의 해외이주 ⑤ 사업장의 폐업 ⑥ 가입자의 3개월 이상의 치료, 요양 ⑦ 금융기관의 영업정지, 파산 ※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(사망 제외)	① 천재지변, ② 가입자의 사망 ③ 가입자의 개인회생/파산신고 ④ 가입자의 해외이주 ⑤ 가입자 및 그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의 치료, 요양 ⑥ 금융기관의 영업정지, 파산 ※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(사망 포함)
특별중도해지 사유시 과세	기타소득세 20% (종합과세 가능) (해지가산세 면제)	기타소득세 15% (분리과세)
사망으로 해지시	연금소득 5% (종합과세)	기타소득세 15% (분리과세)
인출순서	인출순서 없음 (과세제외/대상금액 비율대로 인출)	인출순서(①→②→③) ①과세제외금액, ②이연퇴직소득, ③기타금액(소득공제액, 운용소득)
상속승계	불 가	사망시, 배우자 승계 가능

II 연금저축계좌 개설

- 세제혜택 및 해지시 불이익 등 연금저축계좌의 주요내용을 담은 '약관' 및 '연금저축계좌 핵심설명서'를 고객에게 설명·교부
- 연금저축계좌 **가입자격은 제한 없음**
 - * 종전 조세특례제한법 상 가입조건 '만18세이상 국내거주자' 폐지됨
- 소득공제 대상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이므로 비거주자가 연금저축신탁 가입시 소득공제가 되지 않음을 안내
- 계좌의 **연간 납입**한도 지정
 - 계좌 개설시 은행연합회를 통하여 연간 납입한도 확인* 필요
 - * 다른 금융회사에 개설한 연금계좌(연금저축계좌 및 퇴직연금계좌(DC, IRP)의 자기부담금)와 합산하여 **연 1,800만원**
 - 다음 금액은 당해 연도의 납입한도와 무관하게 납입 가능
 - ① 이연퇴직소득*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하는 경우
 - * 연금계좌에 납입된 퇴직소득(퇴직소득세 원천징수하지 않은 금액)
 - ② 다른 연금계좌로부터 금액을 이체받는 경우
 - ③ 연금계좌 승계 관련 피상속인(사망자)이 사망한 해당 연도에 사망전까지 납부한 금액[상속인(배우자)의 납입한도와 무관*]
 - * 상속인은 승계한 날로부터 당해 연도의 납입한도만큼 납부 가능

- 연금수령 신청시점 지정(가입일 이후 5년 경과, 만 55세 이후)
 - * 상속인은 승계한 날로부터 당해 연도의 납입한도만큼 납부 가능
 - **가입시점에 적립기간, 연금수령 신청시점을 정해 계약체결**
 - 가입시점에 금융회사는 가입자가 연금을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 '연금수령개시신청서'를 해당 회사에 제출해야 연금수령이 개시된다는 사실을 안내
- 출금 금융회사·계좌 등 지정
 - **중도인출, 연금지급 등이 발생할 때**, 출금액이 연금저축계좌에 있지 않도록 **출금융 계좌를 연금저축 가입시점에 지정**
- 가입기간은 **계좌개설일(계약체결일)로부터 기산**
 - 다만, 연금저축계좌를 신규로 개설하여 다른 연금저축계좌로부터 전액을 이체받는 경우, 이체 전의 다른 연금저축계좌의 개설일을 적용 가능

III 연금저축계좌의 연금개시前 인출

1 자금의 인출 개요 - 5월 중순부터 가능 예상

- 연금저축계좌는 **해지하지 않고 연금개시 전에 자금을 인출 가능**
- 연금수령 개시전에 인출한 경우 연금외수령에 해당되며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보다 과세상 불이익 발생할 수 있으므로,

- 가입자가 인출신청하는 경우, 가입자에게 연금저축계좌 자금의 구성(과세제외금액, 이연퇴직소득, 기타금액)을 안내
- * 연금수령개시 후에도 연금수령한도(후술)를 초과하여 인출하는 금액은 연금외수령이 되며, 연금수령개시 전의 연금외수령과 과세상 동일

(참 고) **수령방법에 따른 과세상 차이**

- (연금수령) 연금소득세(나이에 따라 5~3%으로 적용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경우에는 3% 적용

구 분	나이 등(연금수령일 현재)	세율
확정형연금	55세 이상 70세 미만	5%
	70세 이상 80세 미만	4%
	80세 이상	3%

* 지방세(원천징수세액의 10%) 별도 부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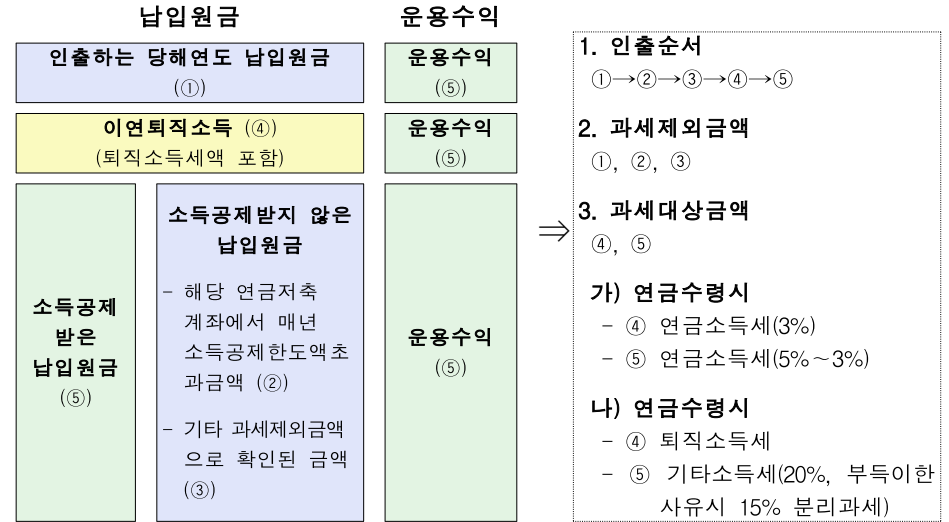
- (연금외수령) 기타소득세(20%) 적용(부득이한 사유에 해당시 15% 분리과세 적용), 이연퇴직소득은 퇴직소득세 적용

* 과세제외금액은 연금수령과 연금외수령 중 어떠한 방식으로 인출하더라도 과세에서 제외

2 자금의 인출 순서

- 연금저축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하는 경우 ①과세제외금액*, ②이연퇴직소득, ③그 밖의 소득금액(소득공제액+운용소득) 순으로 인출되는 것으로 보고, 그에 맞게 원천징수
- *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으로 과세제외금액은 ①인출하는 당해 연도에 납입한 금액, ②해당 연금저축계좌에서 매년 소득공제 한도액(400만원)을 초과하는 금액, ③그 외에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 순으로 인출되는 것으로 간주

자금의 인출 순서



3 자금의 인출 후 재납입

- 당해연도 납입한도 내에서는 인출한 금액을 다시 납입 가능
 - 예시1) 가입자가 연금저축계좌(납입한도 1,800만원)에서 당해 과세기간 중 500만원 납입 후 300만원 인출
 - 당해연도 중 1,600만원(1,800만원-500만원+300만원) 추가 납입 가능
 - 예시2) 가입자가 A 금융회사의 연금저축계좌(납입한도 1,800만원)에 납입 중 해지하고, 당해연도에 B 금융회사에 연금저축계좌를 신규 개설한 경우
 - 당해연도에 B금융회사 계좌에 1,800만원 납입 가능
- 당해연도 이전에 납입했던 금액까지 인출한 경우, 당해연도의 납입한도를 초과한 납입은 불가

- 예시) 연금저축계좌(납입한도 1,800만원) 내에 직전년도까지의 과세제외금액 3,000만원과 당해연도 납입액 1,800만원이 있을 경우, 가입자가 4,800만원을 인출시 → 당해연도에 1,800만원만 다시 납입 가능

- 연금저축계좌 배우자 승계시 피상속인의 잔여 납입한도만큼 추가 불입은 불가하며 피상속인의 납입한도를 승계할 수 없음

- 예시) 피상속인의 연간 납입한도는 1,800만원, xx연도에 1,000만원 납입하고 연중에 사망한 경우, 나머지 800만원 납입한도를 배우자가 승계 불가하며 또한 배우자 본인의 연간납입한도(예 : 1,800만원)에 피상속인의 납입한도(1,800만원)를 합쳐 3,600만원으로 적용 불가

- 승계된 계좌금액은 상속인의 당해 과세기간 납입액으로 산정되지 않음

- 예시) 피상속인의 연금저축계좌 평가액(예:3,000만원)을 xx연도에 상속인이 승계했다 라도 이와 무관하게 xx연도에 상속인 본인의 연간납입한도까지 납입 가능

4 부득이한 사유의 적용

- 소득세법 시행령(제20조의2)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*로 자금 인출을 신청**하는 경우,

- (연금개시 前)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6개월 이내*에는 횟수에 제한없이 15% 분리과세 적용
- 사유발생일로부터 6개월 후에는 연금외수령으로 과세

- (연금개시 後)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6개월 이내*에는 횟수에 제한 없이 당해연도 연금수령한도 이내의 금액까지는 연금수령, 초과하는 금액은 15% 분리과세 적용

* 천재지변(신문 등 객관적 증빙자료 상 발생일자), 가입자의 사망(사망진단서 등 증빙자료 상 발생일자), 해외이주(해외이주신고서 등 증빙자료 상 발생일자), 파산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(법원 결정문 등 증빙자료 상 발생일자),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치료·요양(진단서 등 증빙자료 상 발생일자), 금융기관의 영업정지, 인·허가 취소, 해산결의, 파산선고(법원 결정문 등 증빙자료 상 발생일자)

부득이한 사유에 대한 과세

구 분		6개월 이내	6개월 초과
연금개시 前		15% 기타소득과세 (분리과세)	20% 기타소득과세 (종합과세 가능)
연금개시後	연금수령한도 이내금액	연금수령 과세(5%~3% 등)	
	연금수령한도 초과금액	15% 기타소득과세 (분리과세)	20% 기타소득과세 (종합과세 가능)

IV 연금저축계좌의 이체

1 이체 개요 - 5월 중순부터 가능 예상

- 연금저축계좌에서 다른 연금저축계좌로 자금을 이체 (일부 또는 전부)하는 경우 인출로 보지 않고 과세하지 않음

- 연금수령中 계좌에서 ⇒ 연금수령前 계좌로 이체가능(반대 불가)

□ 이체 시 연금계좌 가입일 등 연금계좌에 대한 적용기준

- ① 원칙 : 이체받은 연금계좌
- ② 예외 : 이체하는 연금계좌의 신규계좌로 전액이체 시는 이체하는 연금계좌 적용가능 (고객선택)

□ 다음의 경우는 인출로 간주 (이체불가)

- ① 新 연금저축펀드계좌 ⇒ 구 연금저축펀드
- ② 구 연금저축펀드 ⇒ 구 연금저축펀드
- ③ 구 연금저축펀드 ⇒ 新 연금저축펀드계좌 일부이체
- ④ 퇴직연금계좌 ⇒ 신 연금저축펀드계좌

참 고)

계좌체계 차이

구분	기존 가입자 (구 연금저축펀드)	신규 가입자 (新 연금저축펀드계좌)
계약 주체	운용사	판매사
약관적용	수익증권 통장거래 약관	표준약관 (연금저축계좌설정약관)
계약이전 및 인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상품단위 (1계좌 1펀드) • 구 연금저축 (기존 가입된 펀드) 펀드내 전환 및 추가매수만 가능 - 신규종목 매수 불가 • 해지 전 인출 불가 • 금융기관간 계약이전 : 전액 이전만 가능. 단, 新 연금저축펀드계좌로만 이체 가능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종합계좌단위 (1계좌 多 상품) • 구 연금저축 펀드 + 일반펀드 (MMF 포함)의 연금전용클래스 (C-P형) 등 모든 펀드의 분산 투자 및 종목교체 가능 • 해지 전 중도, 전액 인출 가능 • 금융기관간 계약(이체)이전 : 일부, 전부 이전(이체) 가능 단, 구 연금저축펀드로 이체 불가

참 고)

기존 가입자 이체방법

구분	기존가입자 (구 연금저축 펀드)	新 연금저축계좌로 이체	
		① 종전 계약관계 유지 (종전 가입일 선택)	② 종전 계약관계 포기 (신규가입 선택)
과세	[일부 조세특례법 적용] • 해지가산세 • 특별중도 해지사유 및 과세 • 사망해지시 과세	좌동	소득세법 적용
펀드보유	단일펀드 (1계좌 1펀드)	종합계좌체계 (1계좌 多 상품) - 분산투자, 교체매매 가능	종합계좌체계 (1계좌 多 상품) - 분산투자, 교체매매 가능
이체 (계약이전)	① 구 연금저축펀드 -> 신 연금저축펀드계좌로 전액이체만 가능 (기존계좌 재사용 불가)		
인출	불가 (해지시 가능)	가능 (해지없이 중도, 전액인출)	가능 (해지없이 중도, 전액인출)
계약해지	가능 (5년 이내 해지가산세)	가능	가능

※ 기존 계좌 취급자는 이체와 함께 '연금계좌이체확인서'를 새로운 연금계좌 취급자에게 통보해야함.

- * 예) 조특법에 따라 '12.6.1 가입한 연금저축펀드를 보유한 가입자가 '13.4.1 신규로 연금저축계좌를 개설하여 전액을 이체하는 경우 계좌의 가입일은 '12.6.1 또는 '13.4.1 중 선택 가능
- 종전 가입일을 선택하면 기존 가입기간을 유지하고, 짧은 연금수령기간 (5년), 사망시 연금소득 과세 등 일부 조세특례법을 적용받는 반면
- 신계좌 가입일을 선택하면 가입기간을 포기(다시 5년 경과 필요)하는 대신 해지가산세 면제, 부득이한 사유시 분리과세 등 소득세법을 적용

V 연금의 지급

1 연금수령 기본 절차

- 가입자는 **가입일로부터 5년* 경과 후, 만 55세 이후** 연금수령 개시 신청 가능

* 이연퇴직소득이 있는 계좌는 가입일로부터 5년 경과 적용 배제

- 연금수령을 위한 가입기간 및 연령 요건을 충족하는 날이 속한 월의 전월말까지 가입자에게 **다음사항 등을 안내**

- ① 해당 가입자는 가입일로부터 5년 및 만 55세가 경과하여 xx년 mm월 dd일부터 연금수령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
- ② 해당 가입자가 기 지정한 연금수령 신청시점을 변경할 수 있다는 점
- ③ 해당 가입자가 연금수령을 위해서는 **'연금수령개시 및 해지 신청서'(시행규칙 별지서식 제3호의2) 를 제출**해야 한다는 점

- 가입자는 수령 개시일, 수령주기, 수령할 금액 등*을 지정하여 연금 신청(양식 : 시행규칙 별지서식 제3호의2)

* 연금저축펀드계좌의 경우 가입자는 연금지급을 위한 펀드환매순서를 지정하고 펀드환매순서를 지정하지 않는 경우, 연금저축계좌의 펀드를 계좌 내 비율대로 환매

- 가입자가 연금저축계좌에 대해 과세제외금액으로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금융회사에 다른 금융회사의 연금저축계좌 납입확인서와 소득공제확인서(국세청)를 제출

- 금융회사는 인출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원천징수 후 고객이 사전에 지정한 인출용 계좌로 이체 처리

2 연금수령한도 계산

- 가입자가 **매년 연금소득으로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된 연금수령한도 이내**

$$\frac{\text{연금계좌의 평가액}}{(11 - \text{연금수령연차})} \times \frac{120}{100}$$

- 연금계좌의 평가액은 **과세기간 개시일(연금수령 개시일이 속하는 해에는 연금지급개시 신청일) 기준가 적용****

** 과세기간의 최초 영업일(1.1 이후 최초 영업일) 및 연금지급개시 신청일 당일 장 개시전 예탁원으로부터 전송받은 기준가

- 연금수령한도 적용은 실제 지급(수령)된 해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, 연금수령개시 신청일과 최초 연금수령일 간 기간 제한은 없음

예1) '20년에 연금수령개시 신청(55세) 후 '23년에 연금수령을 개시하는 것도 가능. 다만, '20년 이후 추가납입은 불가하며, '23년 연금수령한도 계산시 '23.1.1 기준으로 평가액을 계산하고 4년차로 계산

예2) '14.12.27 연금수령개시 신청(55세)을 하며 최대한 빨리 수령할 수 있도록 요청한 경우, 환매기간 등으로 인해 '15.1.3 지급이 되는 경우, 평가액은 신청일 당일('14.12.27)로 적용하여 금액을 계산하면 되지만, 가입자는 연금수령한도 적용은 '15년(2년차)으로 적용

□ 연금수령연차의 계산

- '최초 연금수령할 수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'은 연령조건(만 55세 이후 수령) 및 가입조건(5년 경과)을 동시 충족하는 시점

예1) 가입자 A는 '13.5.1(당시 48세) 가입하여 '23.6.1(나이 58세)에 연금수령 개시 신청
⇒ 55세부터 1년차가 기산되어 현재 4년차 적용

예2) 가입자 B는 '18.5.1(당시 53세) 가입하여 '23.6.1(나이 57세)에 연금수령 개시 신청
⇒ 57세부터 1년차가 기산되어 현재 1년차 적용

- 이전(구 연금저축펀드) 가입자는 연령조건(55세 이후 수령) 및 가입조건(5년 경과)을 동시 충족하는 시점에 6년차부터 기산

예1) 가입자 A는 '03.5.1(당시 48세) 가입하여 '13.6.1(나이 58세)에 연금수령 개시 신청
⇒ 55세부터 6년차가 기산되어 현재 9년차 적용

- 다만 2013.2.15 이전 연금수령을 이미 개시한 자는 10년 납입, 55세 요건을 동시 충족하는 시점이 6년차 적용

예1) 가입자 A는 '02.5.1(당시 48세) 가입하여 '12.6.1(나이 58세)에 연금수령 개시 신청
⇒ '13년 현재 7년차 적용

VI 연금저축계좌의 승계

1 승계 개요

- 가입자(피상속인) 사망시 연금저축계좌를 해지하지 않고 배우자(상속인)가 승계(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) 가능

- 승계하는 경우, 상속인의 소득금액으로 보아 과세* 적용
* 연금수령시 연금소득세, 연금외수령시 기타소득세/퇴직소득세 적용
- 승계치 않는 경우,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으로 보아 과세 적용

□ 승계의 절차

- ①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금융회사에 승계신청(사망 증빙서류 포함)
- ② 피상속인 명의 변경 또는 상속인 명의의 계좌 개설
* 상속인이 승계 후 다시 납입한도만큼 납부가 가능하도록 처리
- ③ 피상속인 계좌 내 금액의 원천(소득공제받은 금액, 이연퇴직소득 여부)에 대한 기록을 상속인 계좌로 이전

□ 승계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

- i) 사망확인일* 현재 사망일부턴~사망확인일까지 인출한 소득 및 사망확인일 현재 연금계좌에 있는 소득의 합계액을 연금외수령했다고 보고 계산한 세액에서

* 금융회사가 확인한 날을 의미하며, 사망확인일이 승계신청기한 이전인 경우에는 신청기한의 말일, 상속인이 신청기한이 지나기 전에 연금외수령하는 경우에는 연금외수령하는 날을 의미

- ii) 사망일부턴~사망확인일까지 원천징수된 세액과의 차액을 정산

- 정산대상 : 사망일부터 사망확인일까지의 인출소득
+ 사망확인일 현재 연금계좌에 남아있는 소득

- 정산시기 : 사망확인일

사망일 현재 연금외수령가정시 세액* -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

- * 1. 2/28 이전 가입계좌의 경우 종전 연금소득세(5%) 적용
- 2. 3/1 이후 가입계좌의 경우 개정 기타소득세(15%) 적용

2 승계에 따른 후속효과

□ 승계받은 계좌의 연금수령개시는 상속인의 납입기간(5년) 및 연령요건(55세)을 만족하여야 함

○ 피상속인이 연금수령 중 사망하여 상속인이 승계한 경우에도 연금수령개시를 하기 전까지 추가 납입도 가능

○ 다만, 납입기간 기산을 위한 가입일은 피상속인의 가입일을 승계

- * (예) '13.5.1 계좌를 개설한 피상속인이 '15.6.1 사망하여 상속인이 '15.7.1 승계를 한 경우, '13.5.1의 가입일을 승계
→ 상속인은 '18.5.1에 납입기간 요건(5년) 만족
(다만, 상속인이 55세 이전인 경우 연금수령 불가)

□ 피상속인이 당해 연도에 납부한 금액은 상속인의 납입한도에 영향을 주지 않음

- * (예) 피상속인이 연금저축계좌(1,800만원 한도)에 1,800만원을 납부한 후 당해연도 사망시, 승계한날로부터 당해연도 중 상속인 본인의 연간납입한도 1,800만원까지는 납부 가능

다만, 피상속인이 500만원만 납부하였다고 하여, 피상속인이 추가로 납부할 수 있었던 1,300만원까지 포함한 3,100만원(1,800만원+1,300만원)을 상속인이 납부할 수 있는 것은 아님

□ 피상속인이 연금수령 도중에 사망하여 승계된 경우,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연금수령연차 적용

- * 피상속인이 '13.5.1 연금저축계좌에 가입하여 5년 납입요건을 갖추고 55세부터 연금수령 중 60세에 사망한 경우(사망시 6년차), 53세에 승계받은 상속인은 55세가 되면 연금수령이 가능하며(5년 납입 완료 간주), 피상속인의 사망당시 연차(6년차)를 적용받음

VII 기존 가입자 변경사항

1 기존 가입자에 적용되는 세제 등

□ 이하의 내용은 종전 조세특례제한법을 그대로 적용

구분	기존 가입자	신규 가입자
해지가산세	5년 이내 해지시 해지가산세 2%	해지가산세 없음
해지가산세 면제 사유 (특별중도 해지사유)	천재지변 저축자의 사망, 퇴직, 해외이주, 폐업 저축자의 3개월 이상 치료·요양 금융기관의 영업정지, 인·허가 취소, 해산결의, 파산선고 (종전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사유)	-

구분	기존 가입자	신규 가입자
15% 분리과세 적용사유 (부득이한 연금외수령 사유)	-	천재지변 가입자의 사망, 해외이주, 파산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치료·요양 금융기관의 영업정지, 인·허가 취소, 해산결의, 파산선고 (개정 소득세법에 의한 사유)
사망으로 인한 해지시 과세	연금소득 5%*	기타소득 15% 분리과세
연금수령 기산연차	6년차	1년차
기산연차 적용방식	'13.2.15 이전 개시자: 10년 납입, 55세 요건을 충족한 때부터 6년차 '13.2.15 이후 개시자: 5년 납입, 55세 요건을 충족한 때부터 6년차	5년 납입, 나이 55세 요건을 충족한 때부터 1년차

* 종전 연금소득에 대한 과세를 적용 (나이별로 5~3% 적용 안함)

□ 나머지는 변경된 소득세법을 적용

구분	주요 내용	비고 (종전 제도)
납입요건	가입기간 5년 이상, 연 1,800만원 한도 (퇴직연금 가입자 부담금과 합산)	저축기간 10년 이상, 분기 300만원 한도
수령요건	55세 이후 연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연금수령(연금수령개시 신청 후 인출)	55세 이후 5년 이상 연금으로 지급받을 것
연금수령 한도	$\frac{\text{연금계좌의 평가액}}{(11-\text{연금수령연차})} \times 120\%$	-
연금수령시 과세	연금소득세 5~3% (55~69세 : 5% / 70~79세 : 4% / 80세 ~: 3%, 종합과세 가능)	연금소득세 5% (종합과세 가능)
분리과세 한도	1,200만원(공적연금소득 제외)	600만원 (공적연금소득 포함)
연금외수령시 (해지시) 과세	기타소득세 20%	좌동
소득공제	연간 저축금액 중 400만원 이내	좌동
연금계좌 승계	사망시, 배우자가 승계 가능	-

□ 신 연금저축펀드계좌와 구 연금저축펀드의 인출 사례

예1) 고객이 4년동안 납입한도 전체를 납입후 전액 인출 시

- 납입금액 : 4년 x 년(1,800만원) = 7,200만원
- 소득공제금액 : 년 400만원 x 4년 = 1,600만원
- 운용수익(10%가정) : 총 납입액 7,200만원 x 10% = 720만원

▶ 총 평가금액 : 7,920만원
① 과세제외금액(소득공제 받지 못한 금액)
- 5,600만원 비과세
③ 그 밖의 소득금액 (공제받은금액 + 운용수익)
- 2,320만원 x 기타소득세(20%), 지방세(2%) = 510.4만원
▶ 실제인출금액 : 7,920만원 - 세금(510.4만원) : 약 7,409.6만원

예2) 고객이 4년동안 납입한도 전체를 납입후 일부 인출 시

- 일부인출금액 : 4,000만원

▶ 총 평가금액 : 7,920만원
① 과세제외금액(소득공제 받지 못한 금액)
- 5,600만원 이므로 인출금액 4,000만원 보다 크므로 인출금액 4,000만원 모두 비과세 처리되어 출금됨
▶ 평가금액 : 3,920만원

예3) 위 예시에서 일부 인출 후 전액 인출된 경우

▶ 총 평가금액 : 3,920만원
① 과세제외금액(소득공제 받지 못한 금액)
- 5,600만원에서 4,000만원 사용하였으므로 1,600만원
③ 그밖의 소득 : 2,320만원
- 세금 기타소득세 20%(464만원), 지방세2% (46.4만원)
▶ 실제 인출금액 : 3,920만원 - 510.4 = 3,409.6만원

※ 소득공제를 받지 않을 경우 운용수익을 제외한 금액은 비과세